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1. 12. 20 박수호 의원외 3인
- 나. 회부일자 : 2001. 12. 24
- 다. 상정일자 : 제11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8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2001. 7. 9 개정공포된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산업단지내 건축물은 타 공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기존 공장은 실제로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별표2, 7의 기타 건축물중 산업단지내 건축물을 공장으로 변경하여 타 공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 산업단지내 건축물을 포함한 공장의 주차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외 적용함으로써 공업시설의 부담을 덜어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 9일 개정공포된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개정내용에 따라, 산업단지의 경우 종전의 200㎡ 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이 조례의 경과 규정에 따라 완화적용을 받을 수 없어 산업단지내 부지이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함은 물론 지난 11월 12일 우리시 의회의 산업단지 현지방문시 건의 사항으로 제기된바도 있음. 이와 관련해서 산업단지내 공장을 비롯한 공장부지의 활용방안과 형평성을 검토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장 시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